

의안번호	2215016
의 퇴 인	소병훈 의원
회 답 일	2026. 1. 5.
추 계 번호	25C680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9조의3(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(제1항) 18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저소득 미가입자*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은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 이하이면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고,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아니면서 실업크레딧을 수급하지 않는 자 (제2항)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·국민연금기금·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3(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청년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는 경우, 관련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자가 크레딧 지원을 받는 경우,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에 상응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함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크레딧 수급자의 수 및 증액될 수령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 - 안 제19조의3제1항은 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시 지원범위에 포함될 훈련의 종류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의 수 및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19조의3제2항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크레딧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원칙을 명시하되, 국가·국민연금기금·고용보험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국가·국민연금기금·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대상의 범위와 지원 단가 등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립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